제556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

2020. 11. 13.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11. 13. (금) 10:30 ~ 12: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 **출석위원**(7명)

- **민간위원** : 윤여송(위원장 代), 박소라·안소은 위원

- **정부위원**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Ⅱ. 상정안건

○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공시

- 사립대학의 임원,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Ⅲ. 심의 결과

1. (심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2020-627)

□ 개 요

소관 부처	교육부
근거 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규제 사무명	① 사립학교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공시 ② 임원, 대학법인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위원회 결정 내용	① 원안동의 ② 철회권고

□ 논의 내용

(1) 부처 의견청취

○ (교육부) 現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범위를 넓혀 시행령상 공시항목에 포함 예정. 총장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편차가 있어 공시를 통해 관리하고자 함

아울러 사립대의 경우, 채용비리(임직원 자녀 채용 관련)가 매년 발생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임원 및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항목에 포함 추진하는 것임

사립대학이 많이 투명해지고는 있으나 최소한도로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적정수준으로 교직원 수를 공공기관에 맞춰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 (○○○위원) 친족관계 수는 총 수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 몇 명, 몇 촌 몇 명까지 다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 (교육부) 총 숫자임

○ (○○○위원) 숫자만으로는 자녀인지, 사촌인지, 친족관계까지는 전혀 확인이 안되는 것인지?

○ (교육부) 정보공개에 대한 사학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기관의 청렴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처럼 총 수만 공개하는 것임

○ (○○○위원) 모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총수의 의미가 다를 것임

○ (교육부) 그것은 공시 양식을 정할 때 넣을 수 있는 내용임. 국민이 적절히 해석할 수 있게 공시 방법도 조정하고, 국회 제출 시에도 고려할 예정임

○ (○○○위원) 공시항목을 어떻게 조사하거나 어떻게 만들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지?

○ (교육부) 숫자만 공개해도 다른 공시항목에 직원 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공시 양식 안에 비율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음

○ (○○○위원) 교육부에서는 (친족관계 교직원 수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되어야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 (교육부)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할 수는 없으며, 공개를 하다 보면 추이를 알 수 있음. 채용과 관련하여 사학에 개입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 (○○○위원) 교육부 현재 인력으로 대학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있는지 우려됨

○ (교육부) 현재 진단평가에 많은 혁신지표(취업률, 충원율 등)가 있는데, 모두 공시 관리기관(대교협 등)이 있음. 교육부에서도 각 지표담당 부서와 공시 관리기관이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음. 점검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공시 위반 시 제재와 관련된 규칙들도 마련되어 있음

○ (○○○위원) 업추비나 다른 공시 관련 개인정보 등으로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 (교육부) 기억하는 바로는 없었음. 공개되는 자료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임. 기관장의 업추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공개이므로 소송 제기 등은 없었음

○ (○○○위원) 국립대도 똑같은 사항이 공시되고 있는지?

○ (교육부) 국립대학은 공무원이므로 엄격한 공개채용 절차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에만 적용됨. 교수와 직원 채용에 대한 자율권은 사립대학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존중하되, 결과만 최소한도로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임.

○ (○○○위원) 친족관계 수를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의 침해로 생각함

○ (교육부) 이 부분은 설립자·임원과 직원과의 관계 숫자인데,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도 작년에 채용 비리가 사회문제가 되어 똑같은 범위 내에서 직원 숫자를 공개토록 의무화하였음.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에 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위원)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다른 항목들은 포괄적인 성격임. 친족관계 교직원의 수가 상기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는 애매함

○ (교육부) 공공기관 알리오 등에 비춰 비슷한 항목으로 넣었다고 생각함. 통상의 예나 유사 사례에서 공개하고 있는 범위나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관의 운영 여건에 포함된다고 봄

○ (○○○위원) 친족관계 교직원수 공시는 반대의견도 심하고, 이를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와 위임입법 일탈의 문제도 있음

○ (교육부) 최근에는 공정사회 관점에서 인사상 비리 등에 많은 우려가 있음. 회계와 인사는 투명성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라는 생각임. 법체계 관련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적인 검토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위원) 현재 친족관계 교직원 수를 파악한 통계가 있나?

○ (교육부) 국감을 대비하면서 전체 대학에 요청, 그 중 142개 대학에서 들어왔으며, 그 중 71개 대학에서 182명의 친인척 교직원이 근무 중임. 법령상 의무화가 되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런 부분을 더 투명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도화가 필요함

○ (○○○위원) 친인척 관계 교직원 수가 많은 대학은 어느 정도인지?

○ (교육부) 평균 학교당 2명 정도이며, 많은 학교는 학교당 5-6명 정도인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봐야 함. 최근까지도 친인척 채용 비리 건들이 많이 제보되고 있음.

○ (○○○위원) 사학 입장에서는 취업의 자유도 문제될 수 있음. 또한 친족관계 수의 진위여부 확인과 파악 가능성도 의문

○ (교육부) 한 번 세팅 이후, 신규 진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증을 하면 됨. 사실은 학교 안에서 누가 친인척인지를 다 알고 있음. 공시가 되면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있음

규제 수준과 관련해서도 협의와 의견 청취 등을 하였으며,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음

○ (○○○위원) 명단 공개 대신 단지 수를 공시하는 것만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리라 보지 않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 (교육부) 공공기관의 숫자 공개와 유사하게 그 정도를 맞추었음. 다만 항목별로 raw data를 토대로 확인할 예정임

또한 친족관계 수 공시는 대학 구성원들 간에 그 결과에 따라 신뢰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되며, 채용 관련 적정수준 유지를 통해 대학도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임

공시 의무 자체가 해당 기관이고 국민을 상대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적인 규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위원) 공공기관에서 수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공개하고 있는 영역에서 숫자를 공개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 (교육부) 교육부 소관은 아니지만, 작년에 문제가 돼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위원) 숫자 공시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 교육부가 raw data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숫자에 포함된 개개인의 관계를 다 파악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 (교육부) 점검 나가면 어떤 근거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은 드릴 수 있음

○ (○○○위원) 그러면 모든 개인정보를 다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 (교육부) 그런 차원이 아님.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총 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raw data로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음.

공시 관리기관에서 공시한 정보가 맞는지의 확인이며, 개인정보의 확인이 아님

○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친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문서나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 (교육부) 지금은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사안의 경우 가령 몇 명이라고 하면 그 자료를 받을 수는 없음. 이것은 현장점검에서 확인할 사항임.

○ (○○○위원) 현장점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지?

○ (교육부) 현장에서 확인할 수는 있음. 증빙의 의무는 공시기관이지게 됨.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제보와 다르게 친족관계 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학에 요구하는 것임

○ (○○○위원) 그런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요청 시, 학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 (교육부) 친족이 많은 데 고의로 적게 올린 경우,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해당 학교에 친인척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못하면 공시위반이 되는 것임

○ (○○○위원) 대학을 매년 평가하는데, 이런 것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 (교육부) 이 조항은 없고, 앞으로도 계획상 없음. 국민과 구성원에게 학교의 현 상황을 제시하고, 갈등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음

(2) 위원회 논의

○ (○○○위원) 친족관계 교직원 수 공시는 개인정보, 사생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 (○○○위원) 업추비 사항은 약간의 중복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주요 목적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이므로 원안동의 입장임.

교직원 수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전수조사가 어렵고, 제보를 통한 선택적인 확인도 적절한가 의문이 들어 철회권고 입장임

○ (○○○위원) 예산의 경우 투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추비 공시는 동의하나, 친족관계 교직원 수 공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오히려 비리 발견 시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위원) 친족관계 교직원 수 공시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민감정보일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음. 오히려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사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다 노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교육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

○ (○○○위원) 교육부에서 감사를 할 때 친족관계 교직원 수 등을 파악을 하는데, 굳이 공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임

○ (○○○위원) 공직자 재산신고의 경우는 선언적인 의무를 보여준다고 생각함. 지금 실효성 부문이 많이 논의되었는데, 공직자 재산신고가 모든 재산을 다 조사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공직자가 기준에 맞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거나 확인하는 등 교육부가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학교 스스로의 공시는 나름대로 모든 신고 제도처럼 필요성과 효과가 있을 수 있음. 교육부 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위원)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적 의무로 볼 수는 없음

○ (○○○위원) 필요성과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친족관계 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형태(시행령 별표)가 아니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14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에 다른 항목들은 표현이 중립적인데,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타겟을 정해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되어 있어 이 항목 구성에 맞지 않음

○ (○○○위원) 사립대학에 교직원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적절치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음. 만약 좋은 사람이 학교에 있을 경우,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또 숫자를 공시하게 되면 그 존재에 대해 SNS 등에 확대·파급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비리나 민원 발생 시,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위원) 친족관계 교직원 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판단됨

○ (○○○위원) 사학혁신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합목적적으로 맞는지 보아야 함.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평가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과연 실효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차별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위원) 다수의 의견이 업무추진비 공시는 원안동의, 친족관계 수 공시는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과 명시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것,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철회권고 입장으로 모아짐

□ 심의 결과 : 원안동의 및 철회권고

○ 원안동의

- '사립학교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공시'는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동의

○ 철회권고

- '임원, 학교법인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는 친족관계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정확성, 정책목표 달성에 실효적 수단인지 여부, 정책집행력 확보 등의 문제와 위임입법 일탈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권고